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평창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7. 13. (목)	담당부서	미주통상과
담당과장	미주통상과장 박찬기 (044-203-5650)	담 당 자	이디도 사무관 (044-203-5656)

미국 USTR,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

- 미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개최시기·의제 등 협의해나갈 계획 -

□ 7.13.(목)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

○ 미국은 동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

○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제22.2조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과 실무협의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 조속한 시일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은 서한에서 언급한 것 처럼,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원회에서 개정 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은 공동위원회 결정은 양 당사자의 '컨센서스(consensus)'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가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제22.2조 7 :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 앞으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하기로 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박찬기 과장(044-203-5650), 이디도 사무관(044-203-56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07-13 09:29:13